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8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양, 김제리,
김화숙, 박기재, 이병도,
이영실, 이정인, 홍성룡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특히 공공화장실과 모텔 등 숙박업, 목욕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뉴딜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공공화장실 등”과 “공중위생영업소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3의2호 신설).
- 나.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다. 안심보안관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안 제12조제1항).

라.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의 협조대상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”을 “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)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

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(이하 “시민감시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시민감시단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”을 “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안심보안관”을 “시민감시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공화장실 등”이란 <u>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.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-----.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<u>공중위생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)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</u></p>

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협조)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 등)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,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----
----- 불법촬영 시민감시단(이하 “시민감시단”이라 한다)-----.

② ----- 시민감시단-----
-----.

제11조(협조) 공공화장실과 민간 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-----
-----.

제12조(교육 등) ① ----- 시민감시단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